

202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7조 7,217억 6천 1백만원으로 당초예산(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보다 2조 6,022억 4천 8백만원(10.4%)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119,513	25,119,513	27,721,761	2,602,248	2,602,248	10.4	10.4
지방세수입		24,881,784	24,881,784	24,112,184	△769,600	△769,600	△3.1	△3.1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127,655	127,655	127,655	-	-	-	-
	임시적 세외수입	106,757	106,757	223,748	116,991	116,991	109.6	109.6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1,806	1,806	1,806	-	-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511	1,511	1,511	-	-	-	-
보전수입등	보전수입등	-	-	3,254,857	3,254,857	3,254,857	순증	순증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6,343,109	6,343,109	8,945,357	2,602,248	2,602,24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	3,254,857	3,254,857	3,254,857	
순세계잉여금		-	-	3,254,857	3,254,857	3,254,857	
세외수입		30,878	30,878	147,869	116,991	116,991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0,878	30,878	147,869	116,991	116,991	
지방세수입		6,312,231	6,312,231	5,542,631	△769,600	△769,600	
재산세		4,163,279	4,163,279	3,552,079	△641,200	△641,200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34,004	313,104	△20,900	△20,900	
지방교육세		1,814,948	1,814,948	1,707,448	△107,500	△107,500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49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823억 4천만원 대비 1,326억 3천만원(3.9%) 감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382,339	3,382,339	3,249,714	△132,625	△132,625	△3.9%	△3.9%	
행정 관리	소 계	874,997	874,997	874,437	△560	△560	△0.1%	△0.1%
	행정운영경비	817,694	817,694	817,694	-	-	-	-
	재무활동	16,443	16,443	16,443	-	-	-	-
	사업비	40,859	40,859	40,299	△560	△560	△1.4%	△1.4%
교 부 금	2,507,343	2,507,343	2,375,277	△132,065	△132,065	△5.3%	△5.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17,489	2,617,489	2,484,864	△132,625	△132,625	△5.1%	△5.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9,210	109,210	109,210	-	-	-	-
공무직근로자보수	88,135	88,135	86,435	△1,700	△1,700	△1.9%	△1.9%
직급보조비	21,075	21,075	22,775	1,700	1,700	8.1%	8.1%
재정보전금	1,993,531	1,993,531	1,790,746	△202,785	△202,785	△10.2%	△1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	2,643	2,643	2,643	100%	100%
국고보조금 반환	-	-	0.04	0.04	0.04	100%	1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7	937	377	△560	△560	△59.8%	△59.8%
시세 징수교부금	513,811	513,811	581,888	68,077	68,077	13.2%	13.2%

II. 검토의견

1.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대비 10.4% 증액된 27조 7,217억 6천 1백만원 수준임.
- 재무국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08억 7천 8백만원) 대비 378.9%(1,169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1,478억 6천 9백만원 수준임.
- 세입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7,696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1,169억 9천 1백만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5,119,513	27,721,761	2,602,248	10.4%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769,600	△3.1%
재산세	4,163,279	3,552,079	△641,200	△15.4%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20,900	△6.3%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07,500	△5.9%
세외수입	236,218	353,209	116,991	49.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878	147,869	116,991	378.9%
보조금	1,511	1,511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3,254,857	100%
순세계잉여금	-	3,254,857	3,254,857	100%

가. 지방세수입 감액

- “지방세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24조 8,817억 8천 4백만원) 대비 3.1%(7,696억원) 감액된 24조 1,121억 8천 4백만원 수준으로,
 - 감액편성 세입과목은, ‘재산세(특별시분, 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관련 ‘지방교육세’로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주로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분야의 세입을 감액편성하려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769,600	△3.1%
재산세	4,163,279	3,552,079	△641,200	△15.4%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20,900	△6.3%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07,500	△5.9%

※ 시세로서, 재산세는 세입 전액을 자치구로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특별시분)*와 시 세입 원인 ‘재산세(도시지역분)’로 구분되며, 이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액의 20%로 산정되는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재정보전금’, 2007년 신설)

- 재무국에서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을 재산세 등의 감액편성 사유로 들고 있음.
-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등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거래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매년 확장세를 유지해왔으나,

〈재산세 예·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예산액	2,369,431	2,615,116	2,998,999	3,394,557	3,827,592	4,163,279
신장률	-	10.4	14.7	13.2	12.8	8.8
징수액	2,497,985	2,841,097	3,203,961	3,646,069	3,918,885	-
결산율	105.4	108.6	106.8	107.4	102.4	-

- 금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로 하락함에 따라 세입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는바, 본 재산세 등의 감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3%, 표준지 공시지가는 5.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8.6% 각각 하락된 규모와 비교하여,
- 이미 전년 대비 8.8% 인상되어 202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재산세와, 이와 함께 부과되는 관련 세목의 기정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15.4%(△6,41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3%(△209억원), 지방교육세 5.9%(△1,075억원) 수준으로 각각 감액편성하려는 것이 공시가격 등의 하락 폭에 비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하여는 재무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대비 2023년 세입예산 편성 증가율: 재산세 8.8%(3,3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9%(243억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공시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열람(안)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공시	-22.27	-4.3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열람(안)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4.27.)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23년 공시	-5.92	-5.86	-5.73	-6.02	-6.33	-6.26	-6.10	-6.63	-5.30
공시(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5	9.84
'23년 공시	-5.51	-5.86	-6.42	-6.73	-6.45	-6.12	-6.85	-7.12	-7.08
공시(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5.)

【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23년 공시	-5.95	-8.55	-3.43	-4.47	-4.29	-3.47	-4.82	-4.98	-4.26
열람(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23년 공시	-5.41	-3.10	-4.36	-4.54	-3.53	-2.98	-4.11	-4.50	-5.13
열람(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5.)

나. 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액

- 재무국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08억 7천 8백만원) 대비 378.9%(1,169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1,478억 6천 9백만원 수준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세외수입	236,218	353,209	116,991	49.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878	147,869	116,991	378.9%

-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금년의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내 시유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이 예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846억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324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다만, 재무국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결산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6.3%, 2020년 52.0%, 2021년 14.4%, 2022년 104.3%로 나타나 매년 과도한 세입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또한 당초

예산의 378.9%(1,170억원)를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행태로써 각별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입과목이라고 하겠음.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472,987	29,975	57,957	30,110	106,512	15,318	52,518	54,780	(당초) 30,878
결산율: 6.3%		52.0%		14.4%		104.3%		(추경) 147,869

다. 순세계잉여금 편성

○ 2023년도 재무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는 2022회계연도 초과세입금(2조 3,945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8,603억 5천 7백만원)을 합한 3조 2,548억 5천 7백만원 수준임.

※ 202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5조 8,712억원)

<202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총 계	25,119,513	27,721,761	2,602,248	1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3,254,857	순증
순세계잉여금	-	3,254,857	3,254,857	순증

<202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산출 과정>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			순 세계 잉 여 금 (A-B-C-D)
		집행액(B)	이월액(C)	실제보조금 반납금(D)	
38조 3,196	40조 7,141	37조 1,168	2,752	672	3조 2,549*

* [초과세입액 2조 9,298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5,355억원]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가)	세출결산 집행액 (나)	결산상 잉여금 (다=가-나)	다음연도 이월액 (라)	보조금 반납금 (마)	순세계 잉여금 (바=다-라-마)
2022	53조 4,688	55조 5,717	50조 2,766	5조 2,951	1조 740	832	4조 1,379
일반회계	38조 3,196	40조 7,141	37조 1,168	3조 5,973	2,751	674	3조 2,548
특별회계	15조 1,492	14조 8,576	13조 1,598	1조 6,978	7,989	158	8,831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4	6조 4,428
증 감	5조 7,097	2조 7,126	4조 9,429	△2조 2,303	768	△22	△2조 3,04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401억원) 제외, 보조금 반납금은 실제 반납예정 금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 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 5천 7백만원)은 법정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1조 3,298억 8천 2백만원)에의 지출 및 통합안정화기금* 조성(9,624억 8천 7백만원)에 우선 사용되고, 이를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9,624억 8천 7백만원 수준임.

* 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감채기금 적립 등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용처(가용재원 산출 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2년 결산(B)	정산분 (B-A)	비고
순세계잉여금			3,254,857	
법정의무경비	12,340,725	13,670,607	1,329,882	
교육청 전출금	3,850,280	4,291,619	441,339	
지방교육세	1,966,277	2,093,894	127,617	지방교육세×100%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2년 결산(B)	정산분 (B-A)	비고
증수분			△62,691	
전년도 미전출분			190,308	
담배소비세	257,189	279,620	22,431	담배소비세×45%
증수분			7,678	
전년도 미전출분			14,753	
보통세(증수분)	1,626,814	1,918,105	291,291	보통세×10%
자치구 교부금	6,173,556	7,009,087	835,531	
조정교부금	3,831,470	4,516,757	685,287	
보통세분	3,812,308	4,496,786	684,478	보통세×22.6%
레저세분	19,162	19,971	809	레저세 징수액×20%
재정보전금	1,866,943	1,932,958	66,015	재산세 특별시분×100%
징수교부금	475,143	559,372	84,229	시세×3%
타회계 전출금	2,316,889	2,369,901	53,012	
도시개발	1,406,113	1,436,773	30,660	재산세 도시지역분×70%
교통사업(주차계정)	200,873	205,253	4,380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재촉계정)	200,873	205,253	4,380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도정계정)	200,873	205,253	4,380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소방안전	308,157	317,369	9,21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2,487	(순세계잉여금-법정정산금)×50%
가용자원(일반회계)			962,488	

○ 이처럼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23조 956억원) 대비 13.3%(3조 682억 2천 3백만원) 수준의 지방세 초과세입 발생에 따른 것임.

※ 순세계잉여금 3조 2,549억원 중 지방세 초과세입 3조 682억원(94.2%)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3조 2,548억원

○ 지방세 : 26조 1,638억원(예산현액 대비 3조 682억원 초과징수)

- 지방소득세 8조 8,344억원 2조 7,823억원 초과징수(146.0%)

·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및 신고인원 증가

- 취득세 5조 8,712억원 △3,334억원 부족징수(94.6%)

·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추가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 재산세 등 기타 11조 4,582억원 6,193억원 초과징수(105.7%)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주택 평균 12.1% 상승) 정책효과

○ 세외수입 : 1조 3,366억원(예산현액 대비 △5,517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7,027억원 △7,211억원 부족징수(49.4%)

· DMC부지 매각지연 부족징수(△7,500억원), 공공예금이자 초과수입(518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 6,213억원 1,648억원 초과징수(136.1%)

· 시비반환금 초과징수(808억원), GTX 구분지상권 보상금 초과징수(319억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5억원 46억원 초과징수(158.7%)

· 시유재산 변상금 초과 징수(45억원)

○ 다만 결산상 초과세입에 따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인바,

-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과도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23년 1회	3조 2,549억원	△44.6	2조 3,945억원	8,604억원
‘22년 편성	5조 8,7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20년 편성	2조 3,044억원	7.6	1조 8,407억원	6,224억원
‘19년 편성	2조 1,419억원	△11.9	1조 6,176억원	6,000억원

- 마지막으로 2023년 3월말 기준 재무국의 “지방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4조 8,570억 2천 6백만원) 대비 18.4%(△8,954억 2천 9백만원) 부족 징수(3조 9,615억 9천 7백만원)되어 지방세수입 진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 지방세수입 예산이 전년(23조 955억 7천 4백만원) 대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24조 1121억 8천 4백만원)가 4.4%(8,954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임을 감안할 때,
- 세수 결손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채발행을 통한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하는 등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데,
- 2023년 지방세수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2,497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3조 3,823억 3천 9백만원) 대비 1,326억 2천 5백만원 (△3.9%) 감액된 수준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382,339	3,382,339	3,249,714	△132,625	△132,625	△3.9%	△3.9%	
행정 관리	소 계	874,997	874,997	874,437	△560	△560	△0.1%	△0.1%
	행정운영경비	817,694	817,694	817,694	-	-	-	-
	재무활동	16,443	16,443	16,443	-	-	-	-
	사업비	40,859	40,859	40,299	△560	△560	△1.4%	△1.4%
교 부 금	2,507,343	2,507,343	2,375,277	△132,065	△132,065	△5.3%	△5.3%	

- 재무국에서는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재정보전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국고보조금 반환”,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17,489	2,617,489	2,484,864	△132,625	△132,625	△5.1	△5.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9,210	109,210	109,210	-	-	-	-
공무직원로차보수	88,135	88,135	86,435	△1,700	△1,700	△1.9	△1.9
직급보조비	21,075	21,075	22,775	1,700	1,700	8.1	8.1
재정보전금	1,993,531	1,993,531	1,790,746	△202,785	△202,785	△10.2	△1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	2,643	2,643	2,643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	-	0.04	0.04	0.04	순증	순증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7	937	377	△560	△560	△59.8	△59.8
시세 징수교부금	513,811	513,811	581,888	68,077	68,077	13.2	13.2

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 예산조정 없이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중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직급보조비’에 증액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기정		증감	증감률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9,210	109,210	-	-
공무원근로자보수	88,135	86,435	△1,700	△1.9
직급보조비	21,075	22,775	1,700	8.1

- 재무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1.6.)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2023년 12월분 직급보조비 지급액 부족이 확실시되어 인력운영비 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하여 ‘직급보조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재무국은 2022년 11월에도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13억 8천만원을 전용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한 예외적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인력운영비”운영에 있어서, 당초부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인건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을 위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3회계연도분 출연금 26억 4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2,643백만원 = '21년 보통세 징수액 22,028,648백만원 × 0.01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3 예산		기정 예산대비	
	기정	2023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643	2,643	순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본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및 같은 해 11월 제315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되어,
 - 결국 2023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는바,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
- 재무국은 본 안건을 제출하면서, 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2022.9월 ~ 2023.3월)으로,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선요구를 지속하여 건의한 바 있고,

- ▶ 행안부 및 지방세연구원에 개선방안 지속 건의('22. 9월 ~ '23. 3월)
 - 출연방식 : 보통세 결산액 정률(0.012%) → 매년 사업계획 심사로 출연액 산정
 -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
 - ▶ 이사회 정수 확대를 통한 지자체 참여 제고 : 12명 이내(광역 4, 기초4)
 - 30명 이내(광역 8, 기초 8) ※ 서울시는 이사회에 상시 참여
 - ▶ 연구원 기관운영실적 평가방식 개선 : 절대평가(1인 1분야 3개분야, 단독평가)
 - 3인 1분야 3개분야 평가 후 교차검증

○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개선 과제로 채택되는 등 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 '23년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행안부 주관)
 - (2023. 4월) 제1차 토론회에 우리시 개선방안 제출 ⇒ 개선과제로 채택
 - (2023. 5월) 제2차 중점 개선과제 토론회 참석 서울시 개선방안 개진
 - ▶ 주요내용 : 임원 선임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구성 개편, 출연방식 조정, 관리책임성 강화

- ▶ 출연율 인하 추진 현황
 - 출연율 인하 및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율	0.015%	0.013%	0.012%
절감액		344백만원	592백만원

○ 다만, 한구지방세연구원의 운영방식, 출연제도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실상 개선된 사항은 미미하며,

- 근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의 일반법으로서의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형태의

재단법인화(현 기타법인)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산정 등 본질적 개선 필요사항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나,

- 본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의결을 통하여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유인할 것인지, 또는 개선 필요사항의 즉각적인 개선 촉구를 위하여 출연금 편성 예산을 감액 의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구체적 개선 필요사항 및 방안은 별 건으로 제출된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조

다.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7,907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9,935억 3천 1백만원) 대비 10.2%(2,027억 8천 5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을 전액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인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재정보전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17,489	2,617,489	2,484,864	△132,625	△132,625	△5.1	△5.1
재정보전금	1,993,531	1,993,531	1,790,746	△202,785	△202,785	△10.2	△10.2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¹⁾하여,

-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 재산세전출금’과,

< 공동재산세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교부액	1,837,463	1,751,370	1,577,165	1,300,009	1,165,213

-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로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임.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1)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교부액	29,240	30,260	30,780	31,640	32,38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은 2022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대상 “재산세(특별시분)”의 결산 결과 미지급된 세입(660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금년 “재산세(특별시분)” 세입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감소액(△2,688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를 10.2%(2,027억 8천 5백만원) 감액 조정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1조 7,907억 4천 5백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022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미지급분 2022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액(1,903,477,652천원)-2022년 교부액(1,837,463,000천원) = 66,014,652천원
	○2023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재산세 수입 감소 예산액 = △268,800,000천원
	증감사유
	2022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미지급분 660억원 증액 편성하고 2023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예산 감액 편성에 맞춰 재정보전금 예산액 2,688억 감액

<재정보전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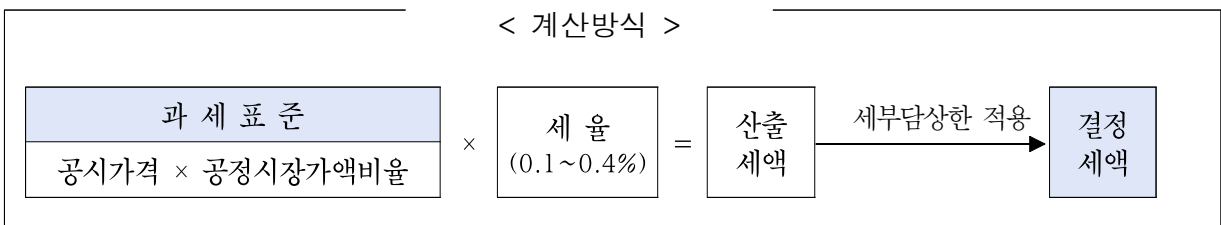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5월 말
예산액 (현액)	1,331,648,979	1,607,945,148	1,781,630,523	1,959,074,763	1,993,531,000
집행액	1,331,648,979	1,607,945,148	1,781,630,523	1,959,074,763	14,620,000
집행률	100%	100%	100%	100%	0.7%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비교적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 세입추계 오차로 인하여 매년 고액의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재산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재산세(시세) 초과세입 발생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2	38,276	38,276	39,189	913	102.4
2021	33,945	33,945	36,460	2,515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공동재산세 물건 중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3배 (2022회계연도 예산, 강남 4,730억원 : 강북 889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보전금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 (결산액 기준)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0.1배(강남 5,712억, 강북 284억)에서 5.0배(강남 3,400억, 강북 686억)로 완화
2020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1.9배(강남 6,512억, 강북 298억)에서 5.1배(강남 3,870억, 강북 763억)로 완화
2021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56억, 강북 292억)에서 5.3배(강남 4,473억, 강북 841억)로 완화
2022년도 (예산액 기준)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990억, 강북 308억)에서 5.3배(강남 4,730억, 강북 889억)로 완화

< 2022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 완화 효과, 강북구 기준 >

-2022년 예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단위: 억원/배)

구 분	2022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36,750	18,375	18,375	36,750	-	-	-
종로구	1,234	617	735	1,352	118	4.0	1.5
중구	1,810	905	735	1,640	△170	5.9	1.8
용산구	1,768	884	735	1,619	△149	5.7	1.8
성동구	1,132	566	735	1,301	169	3.7	1.5
광진구	772	386	735	1,121	349	2.5	1.3
동대문	644	322	735	1,057	413	2.1	1.2
중랑구	430	215	735	950	520	1.4	1.1
성북구	672	336	735	1,071	399	2.2	1.2
강북구	308	154	735	889	581	1.0	1.0
도봉구	308	154	735	889	581	1.0	1.0

구 분	2022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노원구	576	288	735	1,023	447	1.9	1.2
은평구	618	309	735	1,044	426	2.0	1.2
서대문	650	325	735	1,060	410	2.1	1.2
마포구	1,532	766	735	1,501	△31	5.0	1.7
양천구	1,152	576	735	1,311	159	3.7	1.5
강서구	1,176	588	735	1,323	147	3.8	1.5
구로구	662	331	735	1,066	404	2.1	1.2
금천구	448	224	735	959	511	1.5	1.1
영등포	1,696	848	735	1,583	△113	5.5	1.8
동작구	860	430	735	1,165	305	2.8	1.3
관악구	620	310	735	1,045	425	2.0	1.2
서초구	4,586	2,293	735	3,028	△1,558	14.9	3.4
강남구	7,990	3,995	735	4,730	△3,260	25.9	5.3
송파구	3,798	1,899	735	2,634	△1,164	12.3	3.0
강동구	1,308	654	735	1,389	81	4.2	1.6

라. 시세 징수교부금

-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

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지방세 초과세입 (3조 682억 2천 3백만원) 중, 본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7개)에 해당하는 초과세입액을 반영한 5,818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5,138억 1천 1백만원) 대비 13.2%(680억 7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17,489	2,617,489	2,484,864	△132,625	△132,625	△5.1	△5.1
시세 징수교부금	513,811	513,811	581,888	68,077	68,077	13.2	13.2

<최근 3년간 지방세세입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22	230,956	230,956	261,638	30,682	113.3
2021	200,237	200,237	260,012	59,775	129.9
2020	195,524	195,524	233,930	38,406	119.6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징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규모는 이미 연 6,402억원(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가칭)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시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세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5월 말
예산액 (현액)	424,431,388	468,125,760	510,458,159	640,196,050	513,811,530
집행액	424,431,388	468,125,760	510,458,159	640,196,050	231,148,700
집행률	100%	100%	100%	100%	45.0%

<시세 징수교부금 자치구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424,431	100.2	468,126	99.9	510,458	100.0	640,196	100.0	231,148	100.0
종로	16,150	3.8	16,871	3.6	19,160	3.8	23,796	3.7	9,758	4.2
중구	25,943	6.1	26,240	5.6	28,123	5.5	35,881	5.6	14,192	6.1
용산	13,579	3.2	15,997	3.4	19,779	3.9	24,341	3.8	7,395	3.2
성동	12,574	3.0	14,998	3.2	17,520	3.4	21,538	3.4	7,916	3.4
광진	10,837	2.6	11,700	2.5	12,053	2.4	16,205	2.5	5,253	2.3
동대문	10,909	2.6	11,680	2.5	12,183	2.4	15,468	2.4	6,028	2.6
중랑	9,687	2.3	10,895	2.3	11,224	2.2	14,232	2.2	5,041	2.2
성북	12,147	2.9	13,254	2.8	13,899	2.7	17,335	2.7	5,616	2.4
강북	7,142	1.7	7,866	1.7	8,023	1.6	10,236	1.6	3,516	1.5
도봉	8,095	1.9	8,763	1.9	9,119	1.8	11,287	1.8	3,583	1.6
노원	12,208	2.9	13,948	3.0	13,973	2.7	17,356	2.7	5,860	2.5
은평	11,887	2.8	13,241	2.8	13,647	2.7	16,939	2.6	5,476	2.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서대문	9,525	2.2	10,744	2.3	11,032	2.2	13,891	2.2	5,033	2.2
마포	17,626	4.2	19,480	4.2	20,918	4.1	26,694	4.2	9,809	4.2
양천	13,472	3.2	15,379	3.3	15,743	3.1	19,028	3.0	5,930	2.6
강서	21,046	5.0	23,155	4.9	25,466	5.0	31,082	4.9	12,152	5.3
구로	14,366	3.4	16,162	3.5	17,510	3.4	21,779	3.4	7,994	3.5
금천	11,760	2.8	12,525	2.7	13,759	2.7	16,917	2.6	7,028	3.0
영등포	26,475	6.2	29,945	6.4	33,931	6.6	41,526	6.5	17,373	7.5
동작	11,195	2.6	12,323	2.6	13,900	2.7	16,623	2.6	5,257	2.3
관악	11,732	2.8	12,838	2.7	12,902	2.5	16,011	2.5	5,767	2.5
서초	35,277	8.3	36,409	7.8	42,300	8.3	52,698	8.2	17,673	7.6
강남	55,372	13.0	60,498	12.9	68,284	13.4	92,390	14.4	35,027	15.2
송파	31,414	7.4	32,960	7.0	37,426	7.3	45,428	7.1	15,277	6.6
강동	14,013	3.3	20,255	4.3	18,584	3.6	21,515	3.4	7,194	3.1

※구청별 실제 집행한 내역임(귀속년도 결산 정산분 익년 반영).

마.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본 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2023년 세출예산 편성 대상이 되는, 2022년 마일리지 지급액에 대한 정산금 예상보다 감소되어 이에 맞추어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편성 하려는 것으로,
-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9억 3천 7백만원) 대비 59.8%(5억 6천만원) 감액된 3억 7천 7백만원 수준임.

<전자고지 마일리지(기타보상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17,489	2,617,489	2,484,864	△132,625	△132,625	△5.1	△5.1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7	937	377	△560	△560	△59.8	△59.8

- 전자고지 마일리지란,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송달비용 등 징세비용 절감액에 대한 실비보상 취지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규칙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폐지된 바 있음.

< 전자고지 마일리지(기타보상금) 결산·집행 현황 >

(2023년 04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0	(x-) 689,822	(x-) 0	(x-) 0	(x-) 689,822	(x-) 689,822	(x-) 0	(x-) 0
2021	(x-) 1,300,530	(x-) 0	(x-) 0	(x-) 1,300,530	(x-) 1,300,530	(x-) 0	(x-) 0
2022	(x-) 1,949,637	(x-) 0	(x-) 0	(x-) 1,949,637	(x-) 1,949,637	(x-) 0	(x-) 0
2023	(x-) 936,602	(x-) 0	(x-) 0	(x-) 936,602	(x-) 1,597	(x-) 0	(x-) 935,005

- 지방세의 전자송달 방식 등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 편의 확장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23년 5월 기준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가 25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마일리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마일리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적립액	사용액	미사용액	소멸시기
합계	5,607,676	3,113,390	2,494,286	-
2017	550,449	458,126	92,323	2023년
2018	670,452	541,571	128,881	2024년
2019	716,558	505,894	210,664	2025년
2020	1,004,605	602,082	402,523	2026년
2021	1,243,549	606,048	637,501	2027년
2022	1,422,063	399,669	1,022,394	2028년

※ 2023년 5월말 기준

바. 국고보조금 반환(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반납해야할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4만 1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 반환	-	41	41	순증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연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이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여 사용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4만 1천원)에 대하여, 2023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에 반환하려는 것임.

< *재무국 국고보조금 2022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3,860 (국비 6,930)	13,860 (국비 6,930)	0	100
사무관리비	국비	6,450	6,450	0	100
	시비	6,450	6,450	0	100
국내여비	국비	480	480	0	100
	시비	480	480	0	100

※ 1차 교부 수령액(2022.2.4.) : 6,237천원, 2차 교부 수령액(2022.6.30.) : 693천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의 예측이 곤란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기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